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17
----------	-----

2021. 12. 2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2월 2일

-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세동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분장사무 조정>

○ 분장사무 신설

- 기획관리실 :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- 신성장산업국 :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사항
- 환경산림국 : 기후대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
- 농업기술원 : 병해충대응에 관한 사항
- 산림환경연구소 : 산림바이오센터에 관한 사항

<자율신설기구 기간연장>

- 신성장산업국 : 2021년 12월 31일까지 → 2023년 12월 31일까지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부서의 팀 신설·변경(이차전지산업팀, 산림바이오센터, 탄소중립팀) 및 자율신설기구 기간연장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첫째,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고, 둘째, 이차전지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성장산업국에 신설하고, 셋째,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,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환경산림국에 신설하고, 넷째,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설하고, 다섯째, 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음.
- 이는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위하여 현안업무 위주로 과증설 없는 부서기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,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정부조직개편(안)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8호 중 “세입지도, 세무지도”를 “세입관리, 세무조사, 체납관리, 과표 운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6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 에 관한 사항

12. 사회적경제 총괄·기획·조정 에 관한 사항

제9조의2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이차전지산업 육성·지원 에 관한 사항

제1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”을 “기후변화대책”으로 한다.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
4.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5.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제2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농작물 기상재해·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

제39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

제63조제1항 중 ““자치경찰법””을 ““경찰법””으로, “자치경찰법 제24조”를 “경찰법 제24조”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지방세, <u>세입지도, 세무지도</u>,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</p> <p>9. ~ 14. (생략)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세입관리, 세무조사, 체납관리, 과표운영</u>----- -</p> <p>9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16. <u>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행정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9조(경제통상국)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11. · 12.</u> (생략)</p>	<p>제9조(경제통상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지역공동체 사업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12. <u>사회적경제 총괄·기획·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13. · 14. (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)</p>
<p>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 신성장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	<p>제9조의2(신성장산업국) ----- ----- -.</p>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9. ~ 11. (생략)

제13조의2(환경산림국)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,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3. ~ 10. (생략)

제24조(소관사무)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이차전지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
10. ~ 12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

제13조의2(환경산림국)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자연보호,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
3. 기후변화대책 -----
--

4.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5.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7. ~ 14. (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
제24조(소관사무)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농작물 기상재해·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

7. ~ 13. (생략)

제39조(소관사무) 산림환경연구
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12. (생략)

<신설>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
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신성장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2
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7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소관사무) -----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

----- “경찰법” -----
--- 경찰법 제24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
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----- 202
3년 12월 31일-----.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시·도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